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4. 2. 26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4년 2월 17일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4년 2월 19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85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(2014년 2월 26일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- 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이의택

가. 제안이유

동 제정안은 「지진재해대책법」 제21조(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)에 따라
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
2차 피해를 방지하고,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
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1)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우려될 경우 등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
하는 기준 및 이를 평가하기 위한 체제 정비 등을 규정(안 제4조)
- 2)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경우, 20명 이상의 평가단 구성 및 평가단원에 대한
자격 등을 규정(안 제5조)
- 3) 위험도 평가에 따른 사전 파악 내용 및 우선 평가 대상, 위험 시설물 통제
사항 등에 관한 규정(안 제7조)
- 4)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위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규정
(안 제9조)

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이진표)

- 동 제정안은 「지진재해대책법」에 의거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기준 규정(안 제4조)과 위험도 평가단 구성·운영 및 자격 규정(안 제5조),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규정(안 제7조), 지진피해 발생 시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을 규정(안 제9조)함으로써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, 서울특별시 또는 인근 시·군·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 하는 등 주민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상위법인 「지진재해대책법」과 소방방재청 「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」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,
- 부패영향 자율평가와 성별영향 분석평가를 통해 가정복지과 의견을 수렴하여 위험도 평가단 구성·운영 및 자격에 여성 2명을 포함도록 하고(안 제5조제2항), 별지 제1호서식(위험도 평가단원 등록신청서)에 성별란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과 표준조례에 적합하게 반영되어 공익을 해치는 요소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